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으로부터 전력구매 허용〉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0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5.
3. 회 부 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생략)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 ----- -----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¹⁾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1)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

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직접 PPA가 허용됨.

그런데, 일반적인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만큼 발전량이 수요량에 비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설비가 고장·수리 등을 이유로 발전의 불가하거나 발전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초과한 경우 부족하거나 남는 전기를 거래할 수 있어야 전기사용자가 차질없이 전력을 사용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력수급도 안정화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²⁾로 전력이 부족해진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 전력을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

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고장

나. 발전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

는 경우 전력시장에 판매하거나 한전과 거래할 수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므로 한전의 실질적인 경쟁대상인데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한전에게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유사하게 특정 지역적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하거나 남은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한전과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시장과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³⁾되고 있는바, 사업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한전 외에 전력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3) 「전기사업법」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은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은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력 조달 경로를 다변화함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유틸리티를 고려하여 전력구매를 위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분산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력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구매가격⁴⁾과 발전단가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전력시장으로부터 전력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와의 계약량을 충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매할 때 직접 생산한 전기가 전기사용자의 연간 사용량의 70% 미만일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판매하는 요금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⁵⁾에서 규정함.

그러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자체 발전을 통해 일정한

4) SMP(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됨

5)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부족전력량 거래)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업자가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여 생산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최초로 공급한 후 3년까지 초과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수준(예, 연간 사용량의 70%)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외부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부족 전력 외부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1